

發明獎勵施策의 改善方案



金 鍾 協

<梨花女大教授·理博>

1 發明獎勵施策의 概觀

우리나라의 發明은 13世紀의 高麗靑瓷 및 金屬活字를 비롯하여 14世紀의 測雨器, 16世紀의 거북船 등 各各 人類史上 最初의 것을 發明하여 世界文化에 빛나는 業績을 남겼으나 이를 뒷받침할 傳統的이며 體系의인 發明獎勵施策이 없이 理念的이며 概念的인 形態로서만 持續되어 왔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의 發明保護를 위한 制度的 由來는 1908年の 舊韓末 當時의 日本統監府가 支配해온 韓國特許令公布에 따른 統監府特許局이 設置되고 當時倭帝의 彈壓下에서 國權回復의 救國運動으로서 民族指導者들에 의하여 特産獎勵와 發明獎勵運動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解放과 더불어 1946년에 실시된 特許法으로 우리나라 最初의 特許制度가 마련됨으로써 發明保護法의 制定을 보게되고 發明獎勵運動이 試圖되어 왔으나 그 結果는 그렇게 滿足스럽지 못하였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政府는 우리 祖上들이 創案한 發明의 業을 子孫들에게 기리면서 汎國民的으로 發明思想을 鼓吹시키기 위하여 世宗大王때 世界最初의 測雨器가 발명되어 實用化되던 1442년 5월 19일을 「發明의 날」로 制定하여 1959년부터 1972년까지 16년동안 紀念行事와 各種關係事業을 展開하여 왔었다.

이와같은 汎國民的 紀念行事가 政府의 各種關聯行事의 統慶合方針으로 1974년 3월 20일의 「商

工의 날」行事와 統合시켜 發明獎勵를 뒷받침하는 獨立性을 逸失하게 되었음은 못내 아쉬운 바 있거니와 그 必要性에 대하여 다시한번 強調하고 싶다.

한편 發明考案이 權利로서 設定되었을때 이것을 企業化하고 나아가 產業發展에 寄與토록 하기 위하여 政府는 1958년 3월 5일 發明保護法을 制定하였는데 同法은 發明品의 生産, 輸出을 促進하면서 發明品을 普及獎勵하고 이를 통하여 發明家를 保護育成한다는데 目的을 두었는데 外國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劃期的인 獎勵施策으로써 이 법이 지니는 効力은 대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同法에 의하면 優秀한 發明, 考案品으로 인정될 경우 特許는 事業開始日로부터 5年間, 實用新案은 3년동안 營業稅, 所得稅, 物品稅 등 稅制面에서 廣範圍하게 免稅를 받을 수가 있었다.

또한 國內發明考案品의 生産 및 輸出에 필요한 原資材를 輸入할 경우에도 關稅를 減免함은 물론 生産에 필요한 金融支援과 資材의 供給까지도 優先的으로 마련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너무나 廣範圍한 對象에 適用시켜 運營上의 妙는 커녕 적지않게 誤用되는 傾向이 나타나 國家租稅收入에 蹉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모처럼의 發明獎勵施策으로서의 助長行政面에서의 結實을 보지 못하고 드디어 1966년에 租稅減免規制法의 施行으로 遺憾스럽게 그 規制對象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機能을 回復하지 못하고 있음은 못

내 아쉽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록 발명보호법은 그 효력을 잃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1972년부터 국내의 發明考案品을 自主적으로 開發하거나 外國 特許技術의 消化改良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技術開發促進法을 制定施行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發明考案의 企業化를 위해 稅制, 金融面에서 많은 惠澤을 줌으로써 새로운 次元에서의 發明獎勵施策으로 擡頭하게 되었다.

이法도 역시 發明考案의 實施化에 目的을 두고 企業에서의 技術開發에 필요한 研究用試驗機資材와 關聯投資에 所要되는 資金을 自社에서 技術開發準備金으로 所得金額의 一定率을 積立하여 필요할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稅制上으로 費用處理해 주고 있음은 물론 發明·考案을 企業化하는데 필요한 施設資金까지 融資해주는 企業支援을 목적으로 하는 發明獎勵施策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1976년 12월에 政府組織法을 改正하며 工業所有權의 國際化에 對應할 수 있게 1977년 3월에 特許廳을 發足시킨 바 있으며 發明·考案등의 審査를 強化하고 國際特許情報를 國內에서 導入活用할 수 있겠음 國際機構에 加入하는 등 權利化段階의 事前管理의 側面에서 發明獎勵施策을 펴나가고 있다.

또한 特許廳은 汎國民的發明獎勵事業을 展開하기 위하여 韓國特許協會의 協贊으로 國內에 登錄된 發明·考案中에서 그 技術內容이나 國內外活用度가 높은 것을 優秀發明으로 嚴正하게 選定하여 褒賞함과 아울러 國內의 우수한 發明考案을 海外에 出願할 수 있도록 補助金を 支給하는 등 發明考案의 事後의 權利管理의 側面에서 發明獎勵施策을 展開하고 있다.

② 發明獎勵施策의 國內外事例

㉑ 우리나라의 企業支援施策

發明·考案을 誘導하기 위한 發明獎勵支援制度로서 租稅上의 支援과 金融上의 支援으로 大別할 수가 있는데 租稅上의 支援으로서는 ① 技術開發準備金制度: 所得金額의 100分の 20까지 積立하여 社內的 技術開發, 技術情報, 技術訓練, 研究施設, 技術指導등에 사용하고 이 經費는 損

費로서 認定해주는 制度이다.

지난 77년에 74個業體에서 87億원이던 것이 79년에는 120個業體에서 260億원을 積立하여 活用함으로써 發明·考案을 中心으로 한 技術開發 및 投資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② 新技術企業化 投資稅額控除: 特許를 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를 처음으로 企業化하여 그 事業의 固有目的에 直接 사용되는 主된 또는 附隨되는 機械에 投資한 경우 投資金額의 100分の 8~10에 相當한 金額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해 주고 있다.

③ 企業의 試驗研究費, 開發費의 損費認定

④ 研究所設立 및 研究機資材에 대한 投資額의 100分の 8~10에 該當되는 稅額控除

⑤ 試驗研究施設에 대한 初年度의 100分の 50의 特別減價償却認定

⑥ 優秀發明 및 特許技術輸出所得에 대한 所得稅免除등을 들 수가 있다.

다음 金融上의 支援制度로서는 ① 發明·考案된 新技術을 企業化하는데 필요한 技術開發資金과 社內研究所設立에 필요한 資金등을 產業銀行을 통하여 長期低利로서 融資해 줌으로써 企業化事業 및 研究所投資擴大를 支援하고 있다.

② 技術開發回轉基金은 企業의 特許技術開發 및 企業化와 先進技術의 導入促進 및 消費開良, 엔지니어링技術能力의 向上등에 필요한 資金으로 支援하게 되는데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 資金의 造成 및 管理를 擔當할 技術開發株式會社設立을 위한 法的措置를 끝내고 政府, 民間企業, IBRD借款등으로 600億원의 基金을 造成 오는 4月부터 技術開發에 필요한 資金을 融資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다.

③ 海外出願에 대한 補助方法으로서는 外國出願의 積極的인 勸獎으로 發明考案된 優秀한 特許, 實用新案이 外國에 設權되어 海外市場에서의 紛爭豫防과 輸出促進을 圖謀하고자 特許, 實用新案의 外國出願費用에 대한 一定額을 補助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金融上의 發明獎勵支援制度가 된다.

㉒ 外國의 企業支援施策

日本의 경우 發明을 위한 民間企業에 있어서의 自主的 研究開發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우선

稅制面에서는 研究開發費의 支出額에 대한 稅額 控除制度, 新技術 및 新製品을 企業化하는데 사용되는 機械設備등에 대한 特別償却制度 등으로 發明獎勵를 助成해주고 있는데 그 具體的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試驗研究費의 優待措置: ①試驗研究費(人件費, 消耗資材費, 光熱費等)의 損金算入 ②開發研究用減價償却資産의 耐用年數短縮

(2) 試驗研究費增額에 대한 特別稅額控除制度: 企業에서의 技術改良이나 發明·考案에 관계되는 試驗研究에 필요한 費用을 法人稅額 10% 限度內에서 增加한 金額의 25%에 相當하는 額을 稅額에서 控除해 주고 있다.

(3) 新技術企業化用의 機械設備등의 取得, 製造에 대한 優待措置: 發明·考案한 新技術의 企業化用機械設備에 대하여 初年度에 取得價額의 3分の 1을 特別償却해 주며 國內에서 새로 開發한 新技術企業化用機械設備에 대해서는 固定資産稅의 課稅標準을 3年間 50%로 輕減시켜 준다.

(4) 技術輸出所得의 特別控除: 國內에서 開發된 技術을 工業所有權으로 輸出 또는 他人에게 讓渡 및 提供한 경우 그 收入金의 100分の 70에 相當하는 金額은 損金으로 算入해주고 있다.

한편 金融面에서의 發明獎勵施策으로서는

(1) 發明實施化試驗補助金制度: 優秀한 發明考案의 見本을 製作하거나 이에 관한 試驗研究의 實施를 助成하기 위한 試驗補助金과 發明實施化試驗을 한者に 대하여 새로운 增設을 助成하기 위한 設備補助金으로 나누어서 支援하고 있는데 모두가 發明·考案의 實施化를 促進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重要技術研究開發費補助金: 發明·考案된 技術의 向上을 促進하기 위하여 企業化에의 技術研究, 企業化試驗 및 機械設備등의 試作에 補助金으로 支給하는데 ①應用研究補助金 ②企業化試驗補助金 ③機械設備 등 試作補助金의 3가지 種類가 있다.

(3) 中小企業技術改善費補助金制度: 發明·考案에 의한 新技術을 活用한 中小企業製品의 品質向上, 生産性向上, 新製品의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試驗研究 및 試作에 補助金を 주고 있다.

(4) 新技術應用研究費補助金制度: 發明·考案을 活用하여 社會間接施設을 近代化하는데 필요

한 試驗研究에 支給되는 補助金이다.

(5) 外國出願補助金制度: 優秀한 發明·考案을 海外에 進出시켜 輸出을 促進시키기 위한 支援施策으로서 企業이 優秀한 發明·考案을 自國에다 特許, 實用新案으로 出願하고 8個月 以內에 外國에 出願할 때 所要되는 費用의 50%를 補助해 주고 있다.

③ 發明獎勵施策의 改善方案

先進國에서의 發明獎勵施策은 日本을 제외한 대부분의 國가가 特許制度의 發展에 맞추어 運用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특허제도가 100年餘의 歷史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個人, 企業 나아가서는 모든 國民이 發明에 관심을 갖고서 새로운 것을 創案해 내도록 政府가 밀거름을 뿌려 주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歐美先進國보다 모든面에서 특허제도가 뒤떨어졌던 19世紀에 西歐의 文物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緊迫한 것은 産業發展을 촉진시키는 原動力이 되는 特許制度의 導入에 있음을 깨닫고 1885년부터 明治維新의 一環으로 發明獎勵를 위한 이 제도를 實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背景을 토대로 하여 日本特許制度 1世紀가운데 黃金期를 누리고 있는 것은 2次世界大戰以後부터 本格的으로 發明獎勵施策을 펴서 關係事業을 主導할 수 있는 民間團體의 育成과 事業活動基盤의 構築을 위해 政府가 基金을 出捐造成하고 이를 財源으로 하여 關係단체가 主軸이 되어 全國民, 全企業을 대상으로 한 發明獎勵事業을 展開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技術立國으로 成長하게 되었던 것이다.

今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일본의 成功的인 發明獎勵施策을 發展의으로 援用하여 政府次元에서 推進해야 할 性格의 發明獎勵事業은 모두 關係民間團體에 移讓하거나 새로이 發明振興公團과 같은 政府代行機關을 別途로 創設하여 計劃性있고 能動的인 事業을 展開하도록 하되 所要財源을 發明獎勵基金으로 政府가 造成해 줌으로써 長期的인 眼目에서 發明考案을 國家産業發展과 直結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 7面에서 계속 —

따라서 現時點에서 發明獎勵施策의 具體的改善方案을 提示해 보면

첫째 國民의 發明意識은 底邊으로부터 擴散하여 漸次 段階的으로 高揚시켜 나간다는 目的事業을 効率的으로 展開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財政的 支援을 받은 民間團體가 政府를 代行하여야 할 것인바 현재 發明獎勵民間團體로서 事業活動을 벌이고 있는 韓國特許協會에서 그 機能을 強化하여 汎國民的인 運動과 行事를 알차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많은 財源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일본의 發明協會에서의 경우와 같이 政府의 資金造出基盤위에서 이와같은 尙大한 事業이 可能視된다고 본다.

둘째는 企業에서의 發明·考案을 獎勵해 나간다는 側面에서 現行的 稅制, 金融面에서의 支援이 그 要件이 까다롭고 制限的이며 零細한 中小企業이나 發明家에게는 惠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여기에는 發明振興公團과 같은 公的機關을 創設하여 發明獎勵및 實施化支援業務를 効率的으로 一元化하는 方案도 考慮해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推進해야 할 發明獎勵施策은 多種, 多樣, 多急함을 要하고 있기는 하나 이제는 우리가 技術立國의 바탕위에서 世界各國과 國際競爭을 해나가려면 앞으로 새로운 視角에서 發明獎勵施策을 鼎立하여 關聯事業을 展開하지 않으면 아니될 때가 왔다고 하겠다. ☺

— 27面에서 계속 —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를 가고 있는가 古典形態의 中共特許制度는 우리經濟에 分明히 重大한 意義가 있다고 많은 討議에서 認定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克服해야 할 아래와 같은 많은 問題가 아직도 가로놓여 있다.

1) 中共은 파리協約에 加入할 것인가?

2) 中共 國內出願과 外國出願사이의 關係를 어떻게 發展시킬 것인가?

3) 特許制度가 科學者들의 마음에 들 것인가?

누구나 理解하듯 10億人口를 갖고 文化革命 이후 西方에 눈을 돌려서 生活水準을 높이려는 最後의 大市場인 中共은 外國의 投資가 切實히 必要하다.

企業家들은 自身들의 投資에 대하여 補償받을 수 있고 利益을 發生시킬 수 있는 特許制度가 完成될 경우 合作投資事業에 參與할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事項은 우리 西獨經濟의 關心事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自身들의 關心事이다.

世界市場에서의 競爭이 加熱되어 各 工業國家의 經濟界는 새로운 市場開拓에 厲心하게 되었다.

結論은 效果的이고 信賴할 수 있는 特許制度가 存立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이 그러한 制度를 成立시키기를 진정으로 希冀할 뿐이다. ☺

(案) (內)

科學技術處長官 및 特許廳長招請會員朝餐懇談會開催

昨今 繼續되는 國際環境變化에 適應하면서 持續的으로 輸出을 伸張시키기 위해서는 國內企業의 技術開發投資擴大로서 國際競爭力을 培養하는데 있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本會는 80年代 政府의 科學技術 5個年計劃推進에 있어서 民間企業의 技術開發投資支援을 비롯하여 特許技術의 國內外的保護를 위한 工業所有權 4法改正의 背景등 政府施策을 聽取함으로써 이에 관한 企業對策을 세울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고자 李正五 科學技術處長官과 李相燮 特許廳長을 特別히 招請하여 다음과 같이 朝餐懇談會를 開催하오니 부디 參席하시기 바랍니다.

日 時: 1981年 4月 23日(木) 07:30

場 所: 全經聯會館 20層 오키드룸

※ 參席與否를 必히 本會事務局(783-2237~9)으로 連絡하시기 바랍니다.